

보도설명자료

('21. 6. 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림청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육상 풍력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(조선일보 6.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발전의 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
- ◇ 또한,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,
- ◇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①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, ②발전사업허가 前 사전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
- ◇ 6.5일 조선일보 <“산양 서식지·인공 조림지까지 훼손해 풍력발전”>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인공조림지에까지 풍력발전을 추진하여 막대한 숲과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
- 매년 1,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조림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조림을 파헤쳐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담당부처의 입장

- 기사에서 언급한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*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의 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,

* 개정안 주요 내용 : 인공조림지 풍력발전 부지 10% 미만 및 숲길은 대체숲길 조성 시 조건부로 허용

- 산업부·환경부·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당정 간의 협의 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로 추진된 사안임(20.12월 개정 완료)
- 또한,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,
 -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①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, ② 발전사업허가 前 사전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
- 향후, 정부는 환경 및 지역주민과 더욱 조화로운 육상 풍력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·산림청 등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·노력하도록 하겠음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산업과 문양택 과장(044-203-5370) / 권용균 사무관(5377)
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주요원 과장(042-481-4090) / 조성국 사무관(4098)